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9
----------	-----

제출년월일 : 2000.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순환수렵장의 운영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징수액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증 조수보호관련 사업예산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므로써 연차적 계획에 의한 야생조수 보호사업 추진을 위함.

2. 주요골자

- 수렵장 사용료의 적립금 조항 신설
 - 운영기금 조성
 - 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

3. 의안전문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관 계 법 령 : 따로붙임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다음에 제6조의2, 제6조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운영기금 조성)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는 조수 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조수보호사업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한다.

제6조의3(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 ① 수렵장 사용료 징수액중 당해년도의 조수보호관련사업 예산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② 운영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하여 적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사용료)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6조(사용료)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운영기금 조성)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는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조수보호사업기금 (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한다.</p> <p>제6조의3(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 ①수렵장 사용료 징수액 중 당해 연도의 조수보호 관련 사업예산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p> <p>② 운영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하여 적립한다.</p>

關係法令拔萃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수렵장) ⑥수렵장 사용료등 수입은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보호관련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수렵장사용료등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조수보호관련사업) 법 제13조제6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조수의 서식실태 조사
2. 조수 이동경로 조사
3. 먹이식물 식재 등 조수의 서식환경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 조수의 이동통로 설치
5. 표지판 또는 새집등 보호시설의 설치
6. 조수의 인공증식·방사 또는 복원
7. 부상조수 진료시설의 운영
8. 불법포획의 단속
9. 조수조망대의 설치
10. 조수관람장의 조성
11. 홍보물 제작 등 조수보호 계몽활동
12.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수보호단체에서 수행하는 조수보호활동